



학생연구자 지원 지침

규정번호	6-3-28		
제정일자	2021.07.01.		
개정일자			
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처우, 인권,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“학생연구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.

1. 본 대학의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
 2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3. 제1호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
- ② “학생인건비”란 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.
- ③ “연구참여확약”이란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장 간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.

제2장 책임과 의무

제4조(산학협력단의 책임과 의무)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
2. 연구개발과제 계정 관리에 관한 사항
3. 학생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
4.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 체결, 「연구실안전법」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6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)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
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
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

제6조(학생연구자의 책임과 의무)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
2.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보고
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

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

제7조(연구참여확약 체결)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,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며,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다.

1. 연구 주제 및 분야, 주요 참여과제명, 연구수행내용, 역할,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
2.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

제8조(연구참여확약 변경) 산학협력단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제9조(업무범위 제한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학업·연구권 보장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부당업무 거부권 보장)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학생연구자 처우 및 학생인건비 지급

제12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: 월 1,000,000원
2. 석사과정 : 월 1,800,000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116조제1항에 따라 「학술진흥법」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[별표7]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.

제13조(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)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, 균등지급 체계 마련,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.

제14조(학생인건비 산정)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용, 참여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생연구자별로 산정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,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·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에 참여한 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·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15조(학생인건비 지급)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받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제16조(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)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,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
제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

제17조(인격권 보장) 학생연구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건강과 휴식 보장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한다.

제19조(안전 보장)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, 학생연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다.

제20조(재정운영 정보 공개) 학생연구자는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용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21조(고충·상담 창구운영) 본 대학은 연구참여확약의 조건 위반,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며,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.

제22조(위반 시 조치) ① 연구책임자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, 산학협력단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, 징계 절차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제6장 기 타

제23조(기타)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을 따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연구참여확약서

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)

연구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한다.

1. 학생연구원 인적사항

성명		학번		생년월일	
소속(학과명)					
학위과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학사과정 /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사과정 /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사과정			학기	
과학기술인번호				연락처	
주소					

2. 연구참여정보

가. 연구참여기간 : 20 ~ 20

나. 참여과제명 :

다. 담당업무(역할) :

※ 연구수행내용,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할 수 없음

라. 월 참여율 : %

마. 학생인건비 지급액 : 월 원(세금 포함)

바.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 일

사. 지급방법 : 학생연구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

※ 참여중단·종료 시 중단·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(월 등)수에 대해 일할(월할 등) 계산하여 지급함

아. 연구책임자

성명			
소속(학과명)		직급	
연락처	(연구실)	E-mail	

3. 기타 확약 사항

- 가.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- 나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.
- 다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 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.
- 라.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교육을 시행하고,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마. 연구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
- 바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유용)하지 않는다.
- 사.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아.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자.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20 년 월 일

학생연구원 : (서명 또는 인)

연구책임자 : (서명 또는 인)

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※ 유의사항

-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해당연도 협약 기간 전체로 설정을 권고함
- 동 서식은 필요에 따라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